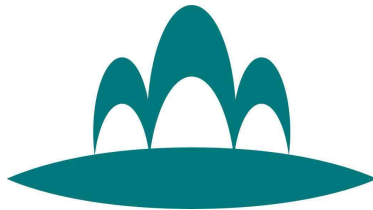


비공무원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미추홀구

1. 감사목적

-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우리 구 공공기관 등의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2. 감사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3-301호(2023.3.13.)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체감사 규칙」 제3조(감사대상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체감사 규칙」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3. 감사범위 및 대상 부서

- 감사범위 : '24. 1. 1. ~ '26. 3. 31. 공무원 채용 및 관리업무 전반
- 감사기간 : '26. 4. 27.(월) ~ 4. 30.(목)
- 감사대상 : 본청 공무원 근로자 채용 부서(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4. 중점 감사내용

- 비공무원 고용 관련 근거 법규 준수 여부
- 채용계획 수립 및 준수, 진행 과정의 적정성 여부
- 「인천시 미추홀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2024. 1. 1. 시행) 준수 여부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적용 및 적정성 여부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규정에 따른 반환 여부

II

감사결과

□ 처분 결과

[단위: 건, 명]

구분	처분현황	행정상	신분상	비고
		주의	훈계	
계	5	3	2	
복지정책과	1	1	-	
자원순환과	4	2	2	

□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부서	지적사항	처분요구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시 가점 부여 부적정 - 사례관리 경력 기간에 따른 가점 착오 부여	주의 요구
자원순환과	환경공무원 채용 업무 부적정 (2024년도) - 체력검정 시험 동점자 처리 부적정 - 채용시험 관련 서류관리 부적정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부적정	주의 요구
	환경공무원 채용 업무 부적정 (2025년도) - 채용계획 사전협의 미실시 - 시험배점 기준에 대한 검토 미흡 - 심사위원 제척·회피 등 운영 소홀 - 채용 심사 부적정	주의 요구 훈계(2명)

□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①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시 가점 부여 부적정 [주의 요구]

- 복지정책과에서는 '25년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른 충원을 위하여 채용 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부 채용계획에 따라 우대사항 평가 배점에는 '사례관리 경력자'에게 경력기간에 따라 최대 4점을 가점으로 부여하고 해당 경력

은 업무분장 및 경력에 '사례관리'로 포함된 것만 인정한다고 하였음에도 면접대상자 1인의 경력증명서에 '사례관리'로 표기되지 않은 경력까지 산정하여 1점을 부여하여야 할 가점을 4점으로 착오 부여하였음.

② 환경공무원 채용 업무 부적정 (2024년도) [주의 요구]

- 자원순환과에서는 2024년도 환경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고문에 “서류·체력·면접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미추홀구 장기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거주기간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 연령이 많은 자를 합격”시킨다고 하였음에도 체력검정 시험에서 발생한 동점자 3인을, 미추홀구 장기 거주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모두 합격시킨 사실이 있으며,
- 미추홀구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에 따르면 기간제 및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록물 보존기간은 30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면접위원 2인의 채점표 원본을 보관하지 않았고,
- 「미추홀구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미추홀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에서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용하도록 명시한 예비합격자 제도를 기준일로부터 7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까지 유지하여 예비합격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음.

③ 환경공무원 채용 업무 부적정 (2025년도) [주의 요구] [훈계]

- 「미추홀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르면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리부서인 총무과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25년도 환경공무원 채용계획서에 총100점 만점의 배점으로 1차 서류심사 10점, 2차 실기시험 40점, 3차 면접시험 50점으로 하였으나, 첨부한 2차 시험 배점표에는 30점으로 기재, 배점이 상호 불일치한 상태로 채용계획을 수립·공고하였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2차 시험 응시자의 점수에 동일하게 10점을 추가 부여하는 등 배점기준 검토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미추홀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사용부서는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를 심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고,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회피 신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나 시험 주관 담당자를 내부심사위원으로 포함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하였고, 서류 및 실기시험 심사위원에게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았음.

- '25년도 환경공무원 채용의 최종 선발인원은 3명(청년층 1명, 장년층 2명)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가점(만점의 5% 또는 10%)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취업지원대상자인 응시자에게 보훈가점을 부여하였고, 자체 계획에 따라 대형 먼허를 1년 이상 소지한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있음.